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결산개요	1
1. 결산총괄	3
II . 주요내역	5
1. 세입	7
2. 세출	7
가. 총괄	7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8
다. 주요 사업비	9
라. 이월내역	10
마. 불용내역	10
3. 재무제표 분석	12
가. 재정상태표	12
나. 재정운영표	14
다. 순자산변동표	15

Ⅲ. 검토의견 17

1. 세출 19

가. 5·18 진상규명 지원(1031-300) 사업 관련 19

(1) 결산개요 19

(2) 국내여비 집행율 저조 20

(3) 청문회 경비 불용 22

(4)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 부진 24

■ 참고자료 29

[참고자료 1] 직권조사 및 개인신청사건 조사현황 31

[참고자료 2] 5·18조사위 잔존사무 추진 계획 39

[참고자료 3]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0

I

결산 개요

1. 결산총괄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¹⁾제정에 따라 설치된 독립 위원회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였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²⁾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후 2년간 진상규명을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2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2023년 12월 26일에 위원회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었으며, 2024년 6월 26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최종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음. 2024년 8월 현재 위원회 사무처만 존속하여 잔존사무를 처리하고 있음.³⁾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일: 2018. 3. 14, 시행일: 2018. 9. 14)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3) [참고자료 2] 5·18조사위 잔존사무 추진 계획 참조

-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38억 7,100만원이며, 이 중 112억 4,000만원 (81.0%)을 집행하고, 26억 3,100만원(19.0%)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도	13,268	603	-	-	-	13,871	11,240	-	2,631
2022년도	13,733	481	-	-	-	14,214	11,914	603	1,697

II

주요내역

1. 세입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지체상금 반납금 징수에 따라 6,700만원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하였음

2. 세출

가. 총 괄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32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00만원을 더한 138억 7,100만원으로, 이 중 112억 4,000만원(81.0%)을 집행하고, 26억 3,100만원(19.0%)을 불용처리 하였음.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36억 7,800만원(32.7%)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로 40억 4,600만원(36.0%), 사업비로 35억 1,600만원(31.3%)이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합 계	13,268	603	-	-	13,871	11,240	-	2,631
○ 인건비	3,922	-	-	-	3,922	3,678	-	244
○ 기본경비	4,421	-	-	-	4,421	4,046	-	375
○ 5·18진상규명 지원	4,925	603	-	-	5,528	3,516	-	2,012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 2023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39억 2,200만원이며, 이 중 36억 7,800만원(93.8%)을 집행하고 2억 4,400만원 (6.2%)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인건비	3,922	-	-	-	3,922	3,678	-	244
- 인건비	3,922	-	-	-	3,922	3,678	-	244

-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예산액 44억 2,100만원이며, 이 중 40억 4,600만원(91.5%)을 집행하고, 3억 7,500만원(8.5%)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기본경비	4,421	-	-	-	4,421	4,046	-	375
- 위원회 기본경비	4,421	-	-	-	4,421	4,046	-	375

다. 주요 사업비

- 2023년도 주요사업비 예산현액은 예산액 49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00만원을 더한 55억 2,800만원이며, 이 중 35억 1,600만원 (63.6%)을 집행하였고, 20억 1,100만원(36.4%)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5·18진상규명 지원	4,925	603	-	-	5,528	3,516	-	2,011
- 5·18진상규명 지원	4,925	603	-	-	5,528	3,516	-	2,011

라. 이월내역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미발생하였음

마. 불용내역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38억 7,100만원 중 26억 3,100만원(19.0%)임.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 등으로 인건비 2억 4,400만원, 지급 사유 미발생 등으로 기본경비 3억 7,500만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비 20억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합 계	2,631
○ 인건비	244
○ 기본경비	375
○ 5·18 진상규명 지원	2,012

- 주요 불용 내역 및 사유는 위원회 인건비의 경우 별정직 급여에 대한 집행 잔액 등이고, 기본경비의 경우 청문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 발생이 주요 원인이며,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디지털 트윈 역사플랫폼 구축’ 사업 등 일부 일반 용역비 및 일반연구비가 사업 미실시로 불용되었고, 손실보상금 및 포상금 또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됨.

3.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말 자산은 13억 1,500만원이고, 부채는 2억 7,500만원이며, 순자산은 10억 4,000만원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1,054	1,542	△488	△31.6
	일반유형자산	255	315	△60	△19.1
	무형자산	5	218	△213	△97.7
	기타비유동자산	-	-	-	-
	자산계	1,315	2,074	△759	△36.6
부 채	유동부채	9	-	9	순증
	장기충당부채	267	50	217	434
	부채계	275	50	225	450
순자산	기본순자산	442	442	0	0
	적립금 및 잉여금	598	1,582	△984	△62.2
	순자산조정	-	-	-	-
	순자산계	1,040	2,024	△984	△48.6

- 2023회계연도 말 자산은 2022회계연도 대비 7억 5,9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진행 중인 용역 관련 선급금 감소 및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상각에 기인한 것임
- 2023회계연도 말 부채는 2022회계연도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원상복구 관련 기타장기충당부채 증가등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재정운영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28억 4,100만원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12,841	12,350	491	4.0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	1	△1	△10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2,841	12,349	492	4.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2,841	12,349	492	4.0

- 프로그램 순원가는 128억 4,100만원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억 9,200만원 증가함

다. 순자산변동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10억 4,000만원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2,024	1,880	144	7.7
II. 재정운영결과	12,841	12,349	492	4.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857	12,494	△637	△5.1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I-II+III+IV)	1,040	2,024	△984	△48.6

- 순자산의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28억 4,100만원임.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18억 5,700만원으로 주로 국고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함

Ⅲ

검토의견

1. 세출

가. 5·18 진상규명 지원(1031-300) 사업 관련

(1) 결산 개요

-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1031-300)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이하 “5·18 조사위”라 함)의 조사활동을 위한 사업임.
-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49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00만원을 더한 55억 2,800만원으로, 이 중 35억 1,600만원(63.6%)을 집행하였고, 20억 1,200만원(36.4%)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목-세목 코드	목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10-01	일반수용비	531	531	-	-	-	531	439	-	92
210-14	일반용역비	610	610	337	-	-	947	680	-	267
210-15	관리용역비	20	20	-	-	-	20	20	-	-
220-01	국내여비	925	925	-	-	-	925	349	-	576
220-02	국외여비	42	42	-	-	-	42	2	-	40
240-01	사업추진비	2	2	-	-	-	2	2	-	-
240-02	관서업무추진비	52	52	-	-	-	52	52	-	-
260-01	일반연구비	2,564	2,564	266	-	-	2,830	1,940	-	890
310-01	손실보상금	22	22	-	-	-	22	-	-	22
310-03	포상금	97	97	-	-	-	97	13	-	84
430-01	자산취득비	60	60				60	20	-	40
합 계		4,925	4,925	603	-	-	5,528	3,516	-	2,011

(2) 국내여비 집행율 저조

- 5·18 조사위는 21건의 직권조사과제 및 신청사건의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여비를 2023회계연도에 9억 2,500만원 편성하였고 이 중 3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37.7%임.

[국내여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목-세목 코드	목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20-01	국내여비	925	925	-	-	-	925	349	-	576

- 국내여비 세부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를 위하여 내부 직원 46명의 일비·식비·숙박비 등으로 총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술인 등 30명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금⁴⁾ 지급 명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3년 국내여비 세부 편성 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세부 편성내역
925백만원	349백만원	37.7%	- 직원 46명×15만원(일비2, 식비2, 숙박6, 교통5만원) ×10회×12개월 = 828백만원 - 진술인 등 30명×10만원×3회×12개월= 9백만원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2018년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5·18 조사위가 성립되어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한 2020년 이후부터 매년 국내여비 집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국내여비 편성/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목-세목 코드	목 명	집행내역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20-01	국내여비	예산액	925	949	780	100
		집행액	349	321	207	99
		집행률(%)	37.7	33.8	26.5	99.0

- 2021년~2022년 조사활동 기간 동안 적게는 26.5%, 많게는 37.7%의 국내여비 불용률을 고려했을 때 2023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2023회계연도에서도 예산 집행률을 감안하지 않은 관계로 국내여비 과다 편성이 이루어졌음.

- 5·18 조사위는 2023회계연도 국내여비 과다 불용 원인으로 2023년 12월 26일 위원회의 조사활동(현장조사, 대인조사, 관계기관 방문 등)이 종료⁵⁾됨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2023년 상반기에

5)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무리되었고 하반기부터는 주로 조사활동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준비 작업 등을 수행함에 따라 현장조사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국내여비 불용 주요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5·18 조사위의 설명은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예상 가능한 상황 요인으로 사전에 위원회 조사활동 종료 시점을 감안하여 하반기 국내 출장 소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여비 과다 불용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청문회 경비 불용

- 5·18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8조⁶⁾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등의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2023회계연도에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되었으나, 5·18 조사위의 결정으로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함.

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청문회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내역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문회 개최 운영비	47,072	47,072	-	-	-	47,072	-	-	47,072
청문회 관련 업무협의	42,500	42,500	-	-	-	42,500	-	-	42,500
청문회 주요 자료 검증비	20,000	20,000	-	-	-	20,000	-	-	20,000
청문회 운영 임차료	22,000	22,000	-	-	-	22,000	-	-	22,000
계	131,572	131,572	-	-	-	131,572	-	-	131,572

* 자료 : 5·18 조사위

- 5·18 조사위는 2023년 10월 16일 제9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청문회 개최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6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시한(2023년 12월 26일)이 2개월 정도 남았음을 고려할 때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과제 조사활동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당면한 선결 과제라는 점과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청문회 개최는 2023년도에 최초 계획되어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5·18 조사위 조사활동 초기인 2021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어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문회 준비 기간의 부족이라는 사유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청문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 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할 수 공식적인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원회 활동 결과의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음.

[연도별 청문회 개최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목-세목 코드	사업명	집행내역	2023년	2022년	2021년
210-01	청문회 개최	예산액	131	131	131
		집행액	0	0	0
		집행률(%)	0	0	0

* 자료 : 5·18 조사위

(4)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 부진

- 5·18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연구, 사실확인 및 조사자료 보존 등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에 일반용역비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2,400만원을 집행(집행율 85.9%)하였고, 일반연구비로 25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16억 7,600만원(집행율 65.3%)을 집행하였음.

[일반용역비/일반연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일반용역비	610	524	86	85.9%
일반연구비	2,564	1,676	890	65.3%

* 자료 : 5·18 조사위

-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예산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5·18민주화운동 디지털 트윈 역사플랫폼 구축 사업’(사업 예산 3억 2,00만원)의 경우 플랫폼에 등재될 조사 내용이 위원회에서 의결 지연된 관계로 사업 추진조차 못 하였는데, 사전에 위원회 의결 지연에 대비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전년도 이월 사업인 ‘5·18희생자 및 행불자 조사과정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및 ‘제3공수단 주요 작전상황 등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인건비 집행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한 관계로 계약 금액을 정산(금액 하향 조정)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두 사업의 계약방식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⁷⁾으로 계약체결 사후에 과업을 완수하여 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정산한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사실은 계약 관련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한 행위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5·18조사위에서는 해당 업체가 납기 지연⁸⁾, 산출내역서와 다른 자금 집행, 사전 협의 없는 인력 변경 등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계약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5·18행불자 유전자 검사 위탁용역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계획한 검사 건수에 비하여 실제 이루어진 검사 건수¹⁰⁾ 차이 발생이 불용 발생의 주요 요인인바, 이는 유족이 유전자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는데 조사위가 유족에 대하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사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설득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8)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 5·18희생자 및 행불자 조사과정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 23,612,100원

- 제3공수단 주요 작전상황 등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 29,400,000원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0) 계획건수 : 512건(유해 312건, 유가족 200건)

검사건수 : 323건(유해 293건, 유가족 30건)

[일반용역비/일반연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 용역비	계	947	680	267
	5·18조사위 자료총서 발간	170	164	6
	5·18관련 군경트라우마 사례조사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70	70	-
	전일빌딩 탄흔 증거물 확보 실험조사 및 탐색 조사	80	7	73
	조사활동 기록영상물 등 제작	100	90	10
	고백과 증언 국민캠페인 운영	150	140	10
	위원회 기자 간담회(대국민보고회)	10	10	-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심판결 등 분석용역	30	30	-
	(이월사업)5·18희생자 및 행불자 조사과정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155	50	105
	(이월사업)제3공수단 주요 작전상황 등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98	35	63
	(이월사업)5·18조사위 자료총서 발간	84	84	-
일반 연구비	계	2,830	1,941	976
	5·18민주화운동 디지털 트윈 역사플랫폼 구축	320	-	320
	5·18행불자 유전자 검사 위탁용역	2,156	1,588	656
	암매장 제보내용 조사 및 발굴용역	176	176	-
	(이월사업)신착자료 DB탑재 위한 스캔분류 및 목록 세분화용역	178	178	-

* 자료 : 5·18 조사위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직권조사 및 개인신청사건 조사 현황

[직권조사 현황]

조 사 과 제 명	위원회결정	전원위 의결결과	의결일
(직나-1),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진상규명불능	표결 2:7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2023-12-26
(직가-2),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진상규명	수정을 전제로 원안의결	2023-12-15
(직가의4-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수정을 전제로 원안의결	2023-12-24
(직마-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진상규명	수정을 전제로 원안의결	2023-12-08
(직가의2-5),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표결 6:3 원안의결	2023-12-23
	진상규명	표결 5:4 원안의결	2023-12-26
	진상규명불능	합의	2023-12-23
	진상규명	합의	2023-12-26
(직마-6), 5·18민주화운동 당시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진상규명	수정을 전제로 원안의결	2023-11-06
(직마-7),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진상규명불능	표결 2:7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2023-12-26
(직가-8),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진상규명	수정을 전제로 원안의결	2023-12-11
(직라-9),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진상규명불능	수정을 전제로 원안의결	2023-12-24

조 사 과 제 명	위원회결정	전원위 의결결과	의결일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진상규명	표결 6:3 원안의결	2023-12-16
(직나-1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진상규명불능	수정을 전제로 원안의결	2023-12-01
(직가-12), 계엄군에 의한 송암동 및 효천역 인근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사건병합 (직가의4-3)	-	-
(직사-1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진상규명불능	표결 4:4 (일부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가부동수부결)	2023-12-26
(직바-14), 검거 간첩 홍종수·손성모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진상규명	수정을 전제로 원안의결	2023-10-30
(직바-15), 5·18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주장사건	진상규명	수정을 전제로 원안의결	2023-12-21
(직바-16),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사건병합 (직바-15)	-	-
(직가의3-1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	진상규명	표결 7:2 원안의결	2023-12-26
(직바-18), 제20사단 차량 피탈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	사건병합 (직바-15)	-	-
(직바-19), 청주시 휴암동 유골 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 침투 주장 사건	사건병합 (직바-15)	-	-
(직가의5-2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진상규명	표결 6:2 원안의결	2023-12-23
(직다-21),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사건	진상규명불능	표결 2:7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2023-12-26

[개인 신청사건 현황]

연번	사건명	전원위 의결결과	결정일
1	서○○ 납치 체포작전 규명	기각	2020-09-14
2	도청앞 발포피해자 박○○ 사건	취하	2023-12-27
3	사망자 김○○ 사건	각하	2020-06-22
4	피해자 이○○ 사건	취하	2020-07-02
5	피해자 진○○ 사건	취하	2023-09-26
6	해직 경찰 박○○ 사건	각하	2020-08-31
7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일대 인권침해 진○○ 사건	규명	2023-12-26
8	피해자 이○○ 사건	각하	2023-10-23
9	피해자 김○○ 사건	기각	2020-10-12
10	신청인 주○○ 사건	기각	2020-11-09
11	신청인 최○○ 사건	규명	2023-12-26
12	신청인 홍○○ 사건	규명	2023-12-21
13	신청인 김○○ 사건	취하	2020-08-05
14	피해자 김○○ 사건	규명	2023-12-15
15	신청인 정○○ 사건	각하	2023-12-15
16	옛전남경찰청사 외벽 탄흔 재조사 요청권(신청인 이○○)	불능	2023-10-23
17	신청인 최○○ 송암동 사건	각하	2023-12-26
18	신청인 최○○ 사건	불능	2023-08-07
19	신청인 박○○ 사건	각하	2020-09-28
20	신청인 최○○ 사건	각하	2020-09-28
21	신청인 장○○사건	기각	2021-02-08
22	신청인 권○○사건	규명	2023-12-26
23	신청인 김○○사건	불능	2023-09-11
24	신청인 구○○가족 사건	기각	2020-10-26
25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01
26	신청인 허○○사건	규명	2023-12-26
27	신청인 송○○사건	각하	2020-11-23
28	신청인 이○○사건	각하	2020-10-12
29	신청인 이○○사건	취하	2020-10-08
30	신청인 안○○사건	기각	2021-03-08
31	신청인 황○○ 사건	취하	2021-03-06
32	신청인 박○○화순 너릿재 사건	각하	2023-12-11
33	신청인 이○○ 사건	불능	2023-12-26
34	신청인 이○○ 사건	불능	2023-12-26
35	신청인 윤○○ 사건	불능	2023-12-08
36	신청인 이○○ 사건	규명	2023-12-26
37	신청인 성○○ 사건	불능	2023-07-24
38	신청인 이○○ 사건	규명	2023-12-26
39	신청인 김○○ 사건	취하	2023-10-18

연번	사건명	전원위 의결결과	결정일
40	신청인 안○○ 사건	규명	2023-12-26
41	신청인 임○○ 사건	각하	2023-11-24
42	신청인 이○○ 예비검속 사건	취하	2022-12-26
43	신청인 김○○ 사건	불능	2023-12-26
44	80.5.21. 11시경 신안사거리 및 전대앞 사건	각하	2021-04-05
45	신청인 정○○ 수습대책위 활동 사건	각하	2022-10-31
46	피해자 정○○ 사건	불능	2023-10-30
47	신청인 최○○ 사건	각하	2021-03-08
48	신청인 김○○ 사건	취하	2023-10-18
49	신청인 김○○ 광주우편물 검열 사건	불능	2023-11-08
50	신청인 안○○ 사건	각하	2021-05-03
51	신청인 정○○ 사건	불능	2023-12-11
52	신청인 광주○○○○ 사건	일부규명	2023-12-26
53	신청인 최○○ 사건	각하	2021-04-19
54	신청인 정○○ 사건	취하	2023-10-18
55	신청인 김○○ 사건	규명	2023-12-26
56	신청인 방○○ 사건	규명	2023-12-26
57	신청인 신○○ 사건	취하	2021-01-28
58	신청인 최○○ 사건	불능	2023-11-06
59	신청인 김○○ 사건	각하	2021-07-29
60	신청인 고○○ 언론인탄압 사건	취하	2021-01-22
61	신청인 유○○ 언론인탄압 사건	각하	2021-05-17
62	신청인 하○○ 사건	규명	2023-12-26
63	신청인 이○○ 사건	규명	2023-12-26
64	신청인 박○○ 사건	규명	2023-12-26
65	신청인 윤○○ 사건	규명	2023-12-26
66	신청서 손○○ 사건	불능	2023-12-26
67	신청인 양○○사건	불능	2023-10-23
68	신청인 정○○사건	각하	2023-09-04
69	신청인 임○○사건	각하	2023-10-16
70	신청인 배○○사건	규명	2023-11-24
71	신청인 이○○사건	각하	2021-07-12
72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73	신청인 주○○사건	각하	2021-11-22
74	신청인 김○○사건	각하	2023-07-24
75	신청인 정○○사건	취하	2021-09-07
76	신청인 이○○사건	규명	2023-12-26
77	신청인 최○○사건	규명	2023-12-08
78	신청인 김○○사건	불능	2023-10-23
79	신청인 김○○사건	취하	2022-12-26

연번	사건명	전원위 의결결과	결정일
80	신청인 최○○사건	기각	2022-03-28
81	신청인 안○사건	불능	2023-12-26
82	신청인 박○○사건	규명	2023-12-26
83	피해자 주○○사건	반려	
84	희생자 손○○ 사건	각하	2021-12-20
85	공용터미널 근처 시신18구 사건	취하	2022-12-26
86	M○○, K○○ 방화사건	취하	2022-12-26
87	31사단 연행자 가혹행위 사건	취하	2022-12-26
88	희생자 최○○ 사건	각하	2021-12-20
89	전교사 연병장 인권유린 사건	취하	2022-12-26
90	미국의 5.27 진압작전 개입사건	취하	2022-12-26
91	5.18왜곡 「광주사태」 발간사건	취하	2022-12-26
92	5.18관련자 삼청교육대 강제 연행사건	취하	2022-12-26
93	정○○의 5.18사전기획 사건	취하	2022-12-26
94	논산훈련소 훈련병 가혹행위 사건	취하	2022-12-26
95	5.18단체에 대한 분열, 회유 공작사건	취하	2022-12-26
96	해외단체의 5.18진상규명 활동사건	취하	2022-12-26
97	경찰의 허위자백 강요 및 조작사건	취하	2022-12-26
98	금남로 리어카 시신 2구 사건	취하	2022-12-26
99	도청 항쟁수습대책위 사건	취하	2022-12-26
100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개입사건	취하	2022-12-26
101	복합요인 사망자 사건	취하	2022-12-26
102	북괴납치설 사건	취하	2022-12-26
103	5.18관련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사건	각하	2021-12-20
104	신청인 박○○사건	불능	2023-12-26
105	피해자 김○○사건	취하	2022-01-20
106	신청인 나○○사건	취하	2021-11-02
107	신청인 김○○사건	불능	2023-10-16
108	피해자 도○○외 3인사건	기각	2022-11-14
109	신청인 이○○사건	각하	2022-03-14
110	신청인 양○○사건	취하	2023-08-10
111	신청인 서○○사건	각하	2022-02-28
112	피해자 나○○사건	취하	2022-05-09
113	신청인 신○○사건	규명	2023-12-26
114	신청인 이○○ 사건	각하	2022-07-11
115	피해자 이○○사건	반려	2021-12-15
116	희생자 이○○열사 사건	취하	2022-01-20
117	신청인 정○○사건	불능	2023-12-26
118	신청인 김○○사건	불능	2023-12-26
119	신청인 박○○사건	불능	2023-12-21

연번	사건명	전원위 의결결과	결정일
120	신청인 이○○사건	규명	2023-12-26
121	신청인 손○○사건	불능	2023-10-04
122	신청인 이○○사건	각하	2022-04-25
123	신청인 이○○사건	취하	2022-11-29
124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1-06
125	신청인 김○○사건	취하	2021-12-03
126	신청인 최○○사건	규명	2023-12-26
127	신청인 이○○사건	규명	2023-12-26
128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129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130	신청인 유○○사건	규명	2023-12-26
131	신청인 심○○사건	규명	2023-12-26
132	신청인 이○○사건	규명	2023-12-26
133	신청인 성○○사건	규명	2023-12-26
134	신청인 백○○사건	규명	2023-12-26
135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136	신청인 안○○사건	규명	2023-12-26
137	신청인 최○○사건	규명	2023-12-26
138	신청인 허○○사건	취하	2021-12-03
139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140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141	신청인 박○○사건	규명	2023-12-26
142	신청인 박○○사건	규명	2023-12-26
143	신청인 전○○사건	규명	2023-12-26
144	신청인 정○○사건	규명	2023-12-26
145	신청인 최○○사건	규명	2023-12-26
146	신청인 박○○사건	규명	2023-12-26
147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148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149	신청인 박○○사건	규명	2023-12-26
150	신청인 이○○사건	규명	2023-12-26
151	신청인 한○○사건	규명	2023-12-26
152	신청인 황○○사건	각하	2022-03-28
153	신청인 조○○사건	규명	2023-12-26
154	신청인 노○○사건	규명	2023-12-26
155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1-06
156	신청인 신○○사건	일부규명	2023-10-30
157	신청인 정○○사건	규명	2023-12-26
158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159	신청인 윤○○사건	규명	2023-12-26

연번	사건명	전원위 의결결과	결정일
160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161	신청인 윤○○사건	각하	2023-10-04
162	신청인 정○○사건	기각	2022-08-22
163	신청인 신○○사건	규명	2023-12-26
164	신청인 형○○사건	규명	2023-12-26
165	신청인 안○○사건	규명	2023-12-26
166	신청인 허○○건	규명	2023-12-26
167	신청인 김○○사건	각하	2022-04-11
168	신청인 이○○사건	각하	2022-04-11
169	신청인 최○○사건	불능	2023-09-25
170	신청인 조○○사건	규명	2023-12-26
171	신청인 서○○사건	일부규명	2023-10-23
172	신청인 한○○사건	불능	2023-10-23
173	신청인 이○○건	규명	2023-12-26
174	신청인 염○○사건	각하	2022-05-09
175	신청인 신○○사건	규명	2023-12-26
176	신청인 전○○사건	규명	2023-12-26
177	신청인 5.18○○○○회 사건	규명	2023-12-26
178	신청인 부산, 울산, 경남 5.18○○○○회 사건	취하	2022-12-26
179	신청인 대구경북5.18○○○○○준비모임 사건	취하	2022-12-26
180	신청인 대전충청5.18○○○○○ 사건	규명	2023-12-26
181	신청인 정○○사건	규명	2023-12-26
182	신청인 장○○사건	규명	2023-12-26
183	신청인 안○○사건	규명	2023-09-18
184	신청인 배○○사건	취하	2022-07-13
185	신청인 김○○사건	각하	2023-08-07
186	신청인 임○○사건	규명	2023-11-06
187	신청인 서○○사건	규명	2023-12-26
188	신청인 이○○사건	규명	2023-09-18
189	신청인 이○○사건	각하	2022-06-18
190	신청인 국○○사건	불능	2023-10-11
191	신청인 이○○사건	규명	2023-10-16
192	신청인 박○○사건	취하	2022-12-26
193	신청인 이○○사건	규명	2023-12-26
194	신청인 김○○사건	각하	2022-03-14
195	신청인 김○○사건	불능	2023-10-04
196	신청인 김○○사건	각하	2022-06-13
197	신청인 강○○외 6명 사건	규명	2023-10-04
198	신청인 안○사건	규명	2023-12-26
199	신청인 임○○사건	각하	2022-03-28

연번	사건명	전원위 의결결과	결정일
200	신청인 김○○사건	취하	2022-03-31
201	신청인 이○○사건	각하	2022-04-25
202	신청인 최○○사건	규명	2023-12-26
203	신청인 차○○사건	규명	2023-12-26
204	신청인 김○○사건	반려	
205	신청인 박○○사건	취하	2023-02-10
206	신청인 오○○사건	규명	2023-12-26
207	신청인 임○○사건	규명	2023-12-26
208	신청인 이○○사건	규명	2023-12-26
209	신청인 조○○사건	취하	2023-10-24
210	신청인 정○○사건	규명	2023-12-26
211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212	신청인 양○○사건	규명	2023-12-26
213	신청인 문○○사건	취하	
214	신청인 김○○사건	규명	2023-12-26

[참고자료 2] 5·18조사위 잔존사무 추진 계획

구분		주요 업무						
조직 운영	규정폐지	· 행정규칙 39개(규칙 15, 훈령 18, 예규 4, 세칙2)						
	관인관리	· 행정기관 폐지에 따라 관인 폐기 처리 및 법령에 따라 신규관인(사무처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제작						
	인사관리	· 잔존사무 처리를 위한 청산단 구성 · 행정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면직 및 파견복귀 · 퇴직자 경력증명서 일괄 발급 후 배부						
	급여관련	· 별정직 및 기간제 근로자 급여·성과급 지급 · 4대 보험료 신고 및 연말정산 ·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						
	예산·회계	· 관서운영경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 기한내 처리 완료 · 재무결산 포함 국가회계결산 및 보고서 작성, dBrain 처리 · 고유등록번호, 회계관서/증명자부호 순차 폐지						
물품·차량 관리		· 위원회 보유·사용 중인 모든 물품 및 차량에 대한 재물조사 실시 · 위원회 구매한 물품 중 관리 전환 가능 물품 선정 및 유관기관(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청 등) 의사 협의 · 가구, PC 등 임차 물품 및 차량은 사무국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반납						
전산장비 관리		· 사무처 청산 업무 수행조직을 제외한 조직폐지 사전 승인 요청(행안부) ·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전자문서 유통종료 사전 안내 및 온-나라 시스템 전자기록물 정리 · 국민신문고(권익위), 정보공개시스템(행안부) 등 폐지 신청 · 사무국 청산 업무 수행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 및 조직 폐지						
사무실 원상 복구		<추진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사전준비</td><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원상복구 공사</td><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공사대금 지급 등</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 임대차 계약사항 확인 · 원상 복구 방법 협의 </td><td style="vertical-align: top;"> ⇒ · 공사 계획 수립 · 공사 견적 및 계약 · 공사 추진 </td><td style="vertical-align: top;"> ⇒ · 공사대금 지급 </td></tr> </table>	사전준비	원상복구 공사	공사대금 지급 등	· 임대차 계약사항 확인 · 원상 복구 방법 협의	⇒ · 공사 계획 수립 · 공사 견적 및 계약 · 공사 추진	⇒ · 공사대금 지급
사전준비	원상복구 공사	공사대금 지급 등						
· 임대차 계약사항 확인 · 원상 복구 방법 협의	⇒ · 공사 계획 수립 · 공사 견적 및 계약 · 공사 추진	⇒ · 공사대금 지급						
기록물 정리 및 이관		· 온나라 문서 및 메모보고 · 온나라 유통 중단 후, 비전자로 생산/접수되는 기록물 · 비전자로 관리되는 문서관리대장 등 각종 대장류 · 청산기간 중 생산·접수되는 예산, 회계 등 모든 행정기록물						

[참고자료 3]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1)진상규명 조사 지연 방지를 위 한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지적사항] 예산현액 45억 2,300만원 중 22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8,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7억 5,300만원 (33.8%)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제한된 활동기간 내에 진상규명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 개선	○ 조치완료 : '22년 5월 31일 - '23년도 사업비 예산 9.7% 감액 조정 편성 * 5,452백만원 → 4,925백만원 - 관련예산 집행률 제고하고 불용을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중	조치 완료

